
**K-AI 도시 기술 로드맵 홍보콘텐츠 제작
과업지시서**

2026. 6

**스마트도시협회
시범도시지원팀**

목 차

I. 과업 개요	1
II. 과업 지시사항	3
III. 과업 수행지침	11
IV. 보안대책	15

I 과업개요

- 용역명: K-AI 기술 로드맵 홍보 콘텐츠 제작
- 용역기간: 계약일로부터 '26.9.18.까지
- 용역예산: 금삼천만원(30,000,000원) (부가가치세 포함)

❖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,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

- 계약방법: 제한경쟁입찰 (협상에 의한 계약)

- 평가방식: 스마트도시협회 자체평가, 기술평가 (90%) / 가격평가 (10%)

□ 배경 및 목적

- (배경)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, 도시 스스로 인지·판단·최적화하는 '지능형 자율도시(AI시티)'로의 패러다임 전환 가속화
 - 미국·중국 등 선도 국가는 AI·로봇 기반 도시 실증과 산업화를 경쟁적으로 추진 중이며, 도시 운영체제(OS) 선점을 위한 국제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
- 정부는 U-city 및 스마트도시 전환 과정에서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AI 국가전략 및 'AI 3대 강국' 실현 목표 추진 중
 - 인공지능 대전환(AX)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K-AI 시티 기술 로드맵이 수립됨에 따라 대외적 홍보 추진 필요
- (목적) 수립된 K-AI시티 기술 로드맵의 핵심 개념, 비전, 서비스에 대한 대·내외 홍보 콘텐츠 제작
 - 도시 패러다임 전환의 흐름과 K-AI시티가 기존 도시와 다른 차별점을 국민 눈높이에서 직관적으로 전달하여, 정책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

- K-AI시티 핵심인 도시지능센터*의 오케스트레이션(Urban Orchestration)** 개념을 시각화하여, AI가 도시 전반을 연계·최적화하는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도 제고
- * CCTV 관제 중심 기존 센터에서 고성능 GPU·NPU 기반 AI 인프라로 고도화된 K-AI시티 핵심 거점
- ** 개별 운영되던 도시서비스를 AI가 데이터 기반으로 연계·협력·최적화하는 차세대 운영 개념

□ 추진 방향

- 도시 패러다임 전환(U-City → 스마트도시 → K-AI시티)을 시민 삶의 변화 중심 스토리텔링으로 구성하여 직관적 공감이 가능한 영상으로 기획
- 도시지능센터의 오케스트레이션(Urban Orchestration) 개념을 시각화 핵심 축으로 설정, K-AI시티의 차별적 정체성을 명확히 전달
- 교통·안전·환경 등 분야 특화 서비스 2종을 실생활 시나리오로 영상화하여 추상 기술개념의 시민체감적인 콘텐츠 구성
- 기술 중심이 아닌 시민 삶 중심 관점에서 K-AI시티 미래상을 제시하여 안전·건강·편의가 향상되는 인간 친화적 도시 비전으로 공감대 형성

- 본 과업의 핵심 특성은 현존하지 않는 미래 도시의 모습과 서비스를 영상으로 구현하는 것으로, 실사 촬영 중심이 아닌 CG·모션그래픽, 디지털트윈 시각화 등 정교한 디지털 제작 기술이 핵심 역량
- *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도시지능센터의 운영 모습, 다중 에이전트 간 데이터 연계 장면, AI 로봇의 도시문제 해결 시나리오 등을 고품질 CG·3D으로 시각화하는 것이 본 용역의 핵심 과업

1. 상세 과업 내용

- 메인 홍보 영상 기획 및 시나리오 제작
 - K-AI 시티에 대한 핵심가치 및 정의를 충분히 이해하고 추진 방향에 맞는 콘텐츠 방향 및 구성 기획
 - 기술 나열 방식이 아닌 시민 일상 시나리오 중심으로 구성하여, 일반 국민이 AI시티를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기획
 - 시나리오에는 장면별 CG 구현 방식·나레이션·자막·모션그래픽 구상을 명시하고, 스마트도시협회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 단계 진행
 - 아래 3대 핵심 콘텐츠를 반드시 포함하여 스토리 흐름에 맞게 구성

<핵심 콘텐츠>

- (K-AI정의) 도시패러다임 전환 스토리
 - U-City → 스마트도시 → K-AI시티로의 도시 진화과정 도시 모습 CG로 시각화
 - 도시지능센터를 중심으로 교통·안전·환경·에너지 등 도시 전반이 유기적으로 연결·조율되는 오케스트레이션 개념을 3D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
 - 기존 도시와 K-AI시티의 차별성을 도시별 비교 인포그래픽으로 명시하고, 시민 삶 중심의 인간 친화적 미래도시 이미지 시각화
- (특화 서비스) 시민 체감도 및 이해도가 높은 분야를 중점으로 AI도시만의 특화 서비스 2종 실생활 시나리오로 영상화
 - * (예시) '인파 밀집도, 기온, 민원 등'을 도시 데이터를 결합해 1단계 도심 내 안전사고 징후 사전 파악, 시뮬레이션 → 2단계 해당 구역 내 교통신호, 대중교통, 경찰 등 에이전트에 명령 하달 → 3단계 사고지역 에이전트가 현장 통제, 드론 현장 중계, 현장 통제 로봇 투입
- (미래상) 도시지능센터 중심으로 디지털트윈·도시 AI 모델·다중 에이전트·로봇플랫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미래 도시 전경을 고해상도 3D 렌더링으로 구현

○ 영상 제작 및 편집

- 영상 제작 전 과정에 전문 인력(총괄PD·편집PD·작가·CG·VFX

디렉터 등)을 구축·투입하고 단계별 과업 내용을 구성

<제작 참여 인력 요건>

- (총괄PD) 공공·정책 분야 홍보영상 또는 CG·VFX 중심 영상 제작 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과업 전 기간 전담 참여를 원칙으로 함
- (CG·VFX 디렉터) 3D 모델링·렌더링·모션그래픽 등 디지털 영상 제작 전문 인력 2인 이상 참여 필수, 유사 포트폴리오 사전 제출
 - * 도시 조감도·AI 인프라·로봇 시나리오 등 고도의 CG 구현 능력 보유 여부를 제시
- (영상 편집PD) 나레이션·자막·음향·CG를 통합하여 최종 편집하는 전문 인력 1인 이상 참여, 편집 소프트웨어 숙련도 확인
- (스크립트 작가) 정책·공공 분야 콘텐츠 작성 경험자를 우선 선발 기술 용어를 시민 눈높이의 언어로 전환하는 역량 필수
- (비주얼 디자이너) 홍보 포스터·카드뉴스·SNS 배너 등 이미지 콘텐츠 제작을 전담하는 그래픽 디자인 전문 인력 1인 이상 참여 하여 영상 콘셉트와 일관된 브랜드 아이덴티티(색상·서체·레이아웃) 유지를 위해 CG·VFX 디렉터와 협업하여 디자인 방향 조율 및 제작
- 주요 참여 인력 변경 시 사전에 스마트도시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무단 교체 시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여 조치

- 도시 전경·도시지능센터 내부·에이전트 연결 흐름 등 주요 장면은 3D 모델링 및 렌더링으로 제작하되, 사실감과 미래지향적 심미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수준의 품질로 구현
- 촬영일 최소 5일 전 기획서·시나리오 등 영상 제작에 필요한 일체 서류를 스마트도시협회에 제출하고 승인 후 진행
- 4K UHD(3840×2160) 해상도, MP4(H.264, 29.97fps) 형식으로 제작하며, 전문 장비 및 최소 2대 이상 카메라 투입(사전 협의)
- 자막·CG·모션그래픽·인포그래픽·BGM 등을 활용하여 기술 개념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전달하는 후반 작업 수행
- 나레이션은 영상 콘셉트에 최적화된 전문 성우·아나운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고품질 음성 합성 기술을 활용하여 전달력 확보
 - * 자료화면 사용 시 스마트도시협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, 구성·화질·녹음 상태·효과음 등에 대한 수정 요구 시 즉시 조치

○ 슷폼 영상 기획 및 제작

- 메인 홍보영상의 핵심 메시지를 압축하거나 독립 주제로 구성하여 SNS·유튜브 쇼츠·인스타그램 릴스 등 온라인 채널 배포에 최적화된 60초 이내 슷폼 영상 2편 이상 제작
- 플랫폼별 시청 환경(세로형·가로형·정방형)을 고려한 화면 비율 및 자막 구성으로 제작하여 채널별 최적화된 형태로 납품
- 짧은 호흡 안에 K-AI시티의 핵심 개념과 시민 체감 서비스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핵심 메시지 중심의 간결한 편집 적용
- 슷폼 영상별 제목·설명문·해시태그 등 온라인 게시에 필요 메타 데이터를 함께 작성하여 납품

○ 홍보 이미지 콘텐츠 기획 및 제작

- 메인 홍보영상과 일관된 디자인 콘셉트(색상·서체·레이아웃)를 유지하여 K-AI시티 아이덴티티가 통일된 이미지 콘텐츠 제작
- 국제행사(WSCE·EXPO) 현장 게시 및 발표자료 삽입에 적합한 고해상도(300dpi 이상) 홍보 포스터를 국·영문 병기로 제작
- 온라인 배포용 카드뉴스·배너 등 디지털 홍보물은 SNS 채널별 권장 규격에 맞게 제작하여 즉시 활용 가능한 형태로 납품
- 납품 시 원본 편집 파일(AI·PSD 등)과 출력용 파일(PDF·JPG)을 함께 제출하여 향후 수정·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리

2. 산출물

○ (메인 홍보영상) 3~5분 분량 1편

- 해상도: 4K UHD(3840×2160), MP4(H.264, 29.97fps)
- 한국어 자막 삽입본 + 영문 자막 삽입본 각 1편

- 한국어 자막 SRT 파일 + 영문 자막 SRT 파일 각 1건
 - 나레이션·BGM·효과음 별도 트랙 분리 원본 납품
 - 편집 원본 프로젝트 파일(Premiere Pro 또는 동급) 및 소스 파일 일체
 - 유튜브·포털 등재용 썸네일 이미지(1280×720 이상) 3종 이상
 - 한국어 자막 SRT 파일 + 영문 자막 SRT 파일 각 1건
 - * 도시 패러다임 전환부터 K-AI시티 미래 비전까지 완결된 스토리 구조로 제작
- (숏폼 영상) 60초 이내 2편
 - SNS·온라인 채널 배포에 최적화된 형식으로 플랫폼별 최적화 규격(세로형·가로형·정방형) 적용
 - 각 영상별 메타데이터(제목·설명·해시태그) 문서 1건
 - * SNS·온라인 채널 배포에 최적화된 형식으로 구성
- (홍보 이미지 콘텐츠) 국·영문 병기 적용한 이미지 콘텐츠
 - 고해상도 홍보 포스터(300dpi 이상), 카드뉴스, SNS 배너 발표자료 활용 감안
 - 원본 편집 파일(AI·PSD) 및 출력용 파일(PDF·JPG) 일체
- 모든 산출물은 국제행사(WSCCE·EXPO), 정책홍보, 해외 협력 및 온라인 홍보 등 다목적 활용을 고려한 완성도로 제작
- 완성 영상은 스마트도시협회의 최종 감수를 거친 후 2026 WSCE 행사 개최 최소 7일 전까지 납품

3. 과업 추진 일정

세부내용	기간(개월)	1	2	3
1. 메인 홍보 영상 기획 및 시나리오 제작				
2. 자료 수집 및 분석				
3. 영상 제작 및 편집				
4. 숏폼 영상 기획 및 제작				
5. 홍보 이미지 콘텐츠 기획 및 제작				

※ 추진일정은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조정 할 수 있음

□ 산출물 제출

가. 일반사항

- 협회는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다.
-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협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.
-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은 협회에 귀속된다.
- 계약 이후 과제별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동 과업의 내용 또는 방식 등이 변경될 수 있다.
 - * 협회는 필요시 선정된 과업수행기관(용역책임자)과 협의를 거쳐 과업수행 계획을 수정·보완(목표, 내용 및 범위 등을 구체화, 명확화)할 수 있음

나. 저작권 등 관련 사항

-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5호 「용역계약일반조건」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하며, 본 사업 결과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자는 협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회는 계약목적물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.
- 영상물에 사용하는 서체·이미지·음원·3D 에셋(Asset)·CG 소스 등은 반드시 정품 또는 라이선스가 확보된 소재를 사용하여야 하며, 과업 수행을 위한 모든 저작권 관련 사항에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.
- 타인의 저작권·특허권 등 권리를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, 저작권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.

-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개발된 제작물 및 일체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스마트도시협회에 귀속되며, 모든 CG 원본 소스 및 편집 원본 파일도 함께 납품한다.
-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자료와 성과품은 스마트도시협회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.
- 사업수행자는 협회의 동의 없이 수정, 변경, 활용할 수 없고, 제작사업자는 저작인격권을 근거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.
- 2차적 저작물과 편집저작물을 포함한 모든 제작물은 협회의 기획으로 명시되어야 한다.
- 저작권, 초상권 등 관련 민원 분쟁 발생 건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확인 및 수정 요청에 응해야 한다.
- 사업수행자가 계약을 수행하면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면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.

다. 초상권 및 촬영 동의

- 영상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(출연자·배경 인물 등 포함)에 대해 촬영 전 서면 동의서를 확보하여야 하며, 동의서 원본은 납품 시 제출한다.
- 특정 장소·건물 촬영 또는 CG로 재현 시 해당 기관의 사전 확인을 거치고, 필요한 경우 촬영 허가서 사본을 협회에 제출한다.
- 초상권·장소 허가 미취득으로 인한 민·형사상 책임은 과업수행자 부담해야한다.

라. 착수보고

- 과업의 착수보고서 및 기획안은 용역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

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.

- 동 보고서에는 과업의 세부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법, 과업 수행자 명단, 참여연구원의 인사기록, 작업 조직의 편성, 공정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
미. 중간보고

- 중간산출물(스토리보드, CG시안 등)은 과업 착수 후 1.5개월 이내 또는 협회의 담당자가 요구하는 시기에 맞춰 전자문서와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.

바. 주간/월간보고

- 협회에서 제공하는 주간보고 양식에 맞춰 매주 목요일에 이메일로 제출
- 월간보고는 대면보고를 원칙으로 하나, 협회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매월 5일 이전에 이메일로 제출

사. 최종보고서

- 최종산출물(안)은 준공 3주 전에 제출하고, 협회의 검토가 완료된 이후 수정 및 보완을 마친 최종산출물은 지정된 일자까지 전자문서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* 제출수량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

아. 주요성과품

성과품	제출형태	제출시기
착수보고서 (기획안)	10부	착수 후 14일 이내
주간/월간보고서	1부	(주간) 매주 목요일 (월간) 매월 5일
중간산출물 (스토리보드, CG시안)	동영상(안) 1식 홍보포스터(안) 1식	착수후 1.5개월 이내
최종산출물	· 동영상 파일 1식 (메인1개, 슷폼2개) · 홍보포스터 1식 · USB · 결과보고서	준공시

□ 일반지침

- 전체 과업을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. 구체적인 일정계획은 과업추진 일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한다.
- 용역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, 용역수행자는 보고 계획에 의거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하고, 성과품을 제출한다.
-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참여시켜야 하며, 동 전문 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용역수행 중 용역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용역책임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- 본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.
- 본 용역에서 취득한 사례조사 결과와 기존 자료를 최대한 포함시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기존에 연구하였거나 진행 중인 연구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.
-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에는 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한다.
- 용역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및 자문회의, 국내외 현지실사조사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과업수행자(수급자)는 예정공정표에 따라 수행한 매월 말 진도내용을

수행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며, 필요시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.

2. 세부과업지침

○ 용어의 해석

-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, 발주처와 과업 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.

○ 과업 및 용역비의 변경

-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.
-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세부과업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연구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.
-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할 수 있으며,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은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○ 용역비용의 사후정산

-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, 직접경비(여비, 출장비, 회의비, 인쇄비 등)에 대하여는 과업 종료 15일 전까지 실비로 정산하여야 한다.
-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경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준공 예정일 30일전까지 구체적인 집행근거(영수증 등)를 제출하여야 하며, 발주처에서는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.

○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

- 본 용역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발주처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.
-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내용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의 협조 등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.

○ 자문회의

- 용역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연구자문단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구성하고,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연구수행 과정상의 주요 내용을 검토·보완 할 수 있다.
- 자문회의 개최시기(일정) 및 자문사항은 연구진행상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한다.

○ 성과품 소유

- 용역결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한다.

○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

-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내용서상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.

○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

- 본 과업 완료 이후에도 과업 결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재검토 보완 하여야 한다.
- 과업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, 발주처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○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

-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.

-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
-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
-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하였거나, 보고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

○ 특허권의 사용

-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인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.

○ 사후관리

- 사업 종료 후 6개월 동안 사업수행 결과물에 발생한 오류에 대해 성실히 수정보완 해주어야한다.

○ 기타사항

- 용역계약 후 과업지시서상에 수록된 내용 이외에 발주처나 관련 행정기관이 보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·반영한다.
- 과업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방침을 받도록 한다.

-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「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」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 각서를 제출하고,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, 분실,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·부 보안책임자를 지정·관리하여야 한다.
-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발주처에 전량 납품한다.
-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·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,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-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(자문위원 등)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.
-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,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,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.

-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,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,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·관리하여야 한다.
-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,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, 폐지 등의 자료는 정·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·소각하여야 한다.
-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,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(업체명, 인가근거, 참여자, 발간일자)하여야 한다.
-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「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